



제 1204호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2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 례 제120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4
○ 조 례 제12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조 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9
○ 조 례 제12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조 례 제12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17

훈 령

○ 훈 령 제30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규정	25
-------------	-------------------------------	----

공 고

○ 공고 제2014- 1722호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7
○ 공고 제2014- 1736호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29
○ 공고 제2014- 17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공고 제2014- 175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고 시

○ 고시 제2014- 1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 3-2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47
○ 고시 제2014- 14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보금자리 주차빌딩】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53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2014. 8. 5) 신규사업(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의 운영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견인업무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추가(안 제23조제15호)
 -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0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별정직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바,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다문화가정의 날)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20일을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 하고,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부터 1주간을 “남동구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단체 격려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행사
4. 다문화 가족과 남동구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의 거주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날’을 지정·운영 함으로써,
- 구민이 서로 화합하고, 인종·민족·국가 간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나아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문화 가정의 날」 및 「다문화 주간」 신설(안 제5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지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

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9. 구(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상담
2. 각종 법률, 행정, 복지 등 정보제공
3. 인권보호
4.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건강, 여가,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알선
6. 통역·번역 지원
7. 구민과의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표창)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2007년부터 남동구 논현동에 집단 거주하게 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지원센터인 남동사할린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
- 남동 사할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융자사업 절차) 구청장은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함에 있어, 기금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 적법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한 후 인천광역시에 융자를 신청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천광역시에 융자를 신청함에 따라 융자사업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융자사업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 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타단지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 할 수 있으며, 단 동일한 단지의 감사 요청일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제3조의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방법)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사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표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2013. 12. 24일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주자등의 권익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감사대상 범위 규정(안 제2조)
-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감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
-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감사의 방법 규정(안 제7조 ~ 제9조)
- 감사기간 규정(안 제11조)
- 감사결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안 제13조)
-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규정(안 제14조)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 훈령 제30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 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법령 또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별정직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 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바, 본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2014-1722호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기간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행정예고내용**

- 사 업 명 : 해오름공영주차장 시설관리용 CCTV설치
- 설치목적 :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범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설치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해오름공영주차장』 일원
-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2.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내용

구분	설치 장소	CCTV 대수	비고
시설관리용 CCTV설치	해오름 공영주차장	4 대	-

4. 행정예고기간 : 2014년 11월 14일 ~ 11월 28일

5.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의 건 제 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잇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4년 11월 14일 ~ 11월 28일

○ 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②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 방문, 우편 및 Fax

①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별관 교통행정과(2층)(우)405-702

② 전화·팩스 : ☎ 032-453-2682 / Fax 032-453-2889

○ 기타사항 :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1736호

부의안전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전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공고기간

- 2014. 11. 18. ~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시 까지

3. 기 타

- 부의안전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2)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175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1. 조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반 확정기준 및 임기 정비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업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변화 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주거형태에 따른 통·반 확정기준 마련(안 제3조)
 - 통의 확정기준 : 4~10개반 / 일반주택 200세대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 반의 확정기준 : 일반주택 30 ~ 60세대, 공동주택 60~100세대
- 통·반장 임기 및 위·해촉 관리 기준 정비(안 제5조)
 - 임기 2년 (3회 연임 가능)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동일 행정구역(동)에서 중임 불가 → 중임 가능
- 반상회 개최 주관 확대 (안 제8조)
 - 반장 → 통·반장

- 통·반장 사기진작 근거 마련(안 제13조)
 - 상해치료비 및 상해보험료 가입, 경연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3, FAX 453-218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수렴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 통·반 획정기준 및 임기 정비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업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변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주거형태에 따른 통·반 획정기준 마련(안 제3조)
 - 통의 획정기준 : 4~10개반
일반주택 200세대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 반의 획정기준 : 일반주택 30 ~ 60세대, 공동주택 60~100세대
- 통·반장 임기 및 위·해촉 관리 기준 정비(안 제5조)
 - 임기 2년 (3회 연임 가능)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동일 행정구역(동)에서 중임 불가 → 중임 가능
- 반상회 개최 주관 확대 (안 제8조)
 - 반장 → 통·반장
- 통·반장 사기진작 근거 마련(안 제13조)
 - 상해치료비 및 상해보험료 가입, 경연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 고 자 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일반주택은 30내지 60세대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세대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중 “3~8개반”을 “4~10개반”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대수는 일반주택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통·반의 개편) 동장은 주민 전출·입 등 변동에 따른 통·반 설치 기준 적정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25세 이상 남녀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의 자로서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봉사정신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를 “해당 반 관할 구역 안에 거주 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확고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전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4. 반장의 재위촉 시 통장은 반장의 그간 활동사항을 토대로 재위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장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 대상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라 해촉된 자는 통·반장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반상회) ① 통·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반”을 “통·반”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 “상해보험”을 “상해치료비 또는 상해보험”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통·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반장이 상호 협력 및 지역사회 공익발전 활동을 위한 자조적 모임 구성시 모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통·반장의 임기 적용은 시행일 현재 2회 (6년)이상 연임자의 경우 현 임기가 만료 될 때 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3~8개반으로 구성한다. 〈후단신설〉 〈신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남녀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확정기준) ----- -----. 1. 반은 일반주택은 30내지 60세대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2. ---4~10개반-----._ 세대수는 일반주택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통·반의 개편) 동장은 주민전출·입 등 변동에 따른 통·반 설치기준 적정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의 자로서 지역사회----- ----- -----.

현행	개정안
2. 반장은 <u>봉사정신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u>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 명칭변경 및 동의 통·반 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위촉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 〈신설〉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2. --- 해당 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u>봉사정신이 확고한 자</u> ----- -----. 3.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4. <u>반장의 재위촉시 통장은 반장의 그간 활동사항을 토대로 재위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장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결정을 하여야 한다.</u> ③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거 해촉 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없으며, 그 후임 대상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임기만료 및 제3항에 따라 해촉된 통장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주택·빌라·공장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에 한하여 2회 이상 공개 모집 하였으나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 대상으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라 해촉된 자는 통·반장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⑤ ----- -----. 〈단서 삭제〉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회의)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2(반상회) ① 통·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생략)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우수 <u>반</u> 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u>통·반</u> ----- -----.
제13조(편의제공) ① (생략)	제13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u>상해보험</u>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u>상해치료비 또는 상해보험</u> -----.
<u><신설></u>	③ 구청장은 <u>통·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u>
<u><신설></u>	④ 구청장은 <u>통·반장이 상호 협력 및 지역사회 공익발전 활동을 위한 자조적 모임 구성시 모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 175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던 자녀장학금을 반장에게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지원의 기반 조직인 통·반장 제도의 운영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1조 ~ 5, 제6조~8조)

- 통장자녀 → 통·반장 자녀

○ 장학금 지급 시기 및 횟수 규정 정비(안 제7조)

- 반장자녀 : 연1회 지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3,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수렴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던 자녀장학금을 반장에게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지원의 기반 조직인 통·반장 제도의 운영 활성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명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1조 ~ 5, 제6조~8조)
 - 통장자녀 → 통·반장 자녀
- 장학금 지급 시기 및 횟수 규정 정비(안 제7조)
 - 반장자녀 : 연1회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 고 자 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통장”을 각각 “통·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통장”을 “통·반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통장”을 “통·반장”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전문의 “통장”을 “통·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통장”을 “통·반장”으로 한다.

제5조의 본문 중 “통장”을 “통반장”으로 한다.

제7조의제1항 중 “장학금은”을 “통장자녀장학금”으로 하고, 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반장자녀장학금은 연1회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2항을 3항으로 하여 “선발된”앞에 “통장자녀장학생”을 삽입하고 중반부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통장”을 “통·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조례)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u>통장</u> 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u>통장</u> 자녀에게 지급하는 <u>통장</u>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 ----- <u>통·반장</u> ----- ----- <u>통·반장</u> ----- <u>통·반장</u> -----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u>통장</u> 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발전, 반사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u>통장</u> 의 자녀 2. (생략)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u>통장</u>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등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u>통·반장</u> ----- ----- ----- -----. 1. ----- ----- ----- <u>통·반장</u> ----- 2. (현행과 같음) ② ----- <u>통·반장</u> -----. ----- ----- ----- -----.
제4조(선발) ① (생략) 1. 모범 <u>통장</u> 표창수상자 (구청장, 시장, 장관등) 2. 생활이 어려운 <u>통장</u> (재산세 연납부액이 60,000원 미만인 자)	제4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 1. --- <u>통·반장</u> ----- ----- 2. ----- <u>통·반장</u> ----- -----

현행	개정안
3. 장기근속 <u>통장</u> ② (생략) ③ 장학생은 각 <u>통장</u>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u>통장</u>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u>장학금</u>은 분기별 또는 학교에서 정하는 공납금의 징수 시기에 맞추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설) ② <u>선발된</u>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 (생략) 1. <u>통장</u>이 사직한 경우 2.~4. (생략)	3. ----- <u>통·반장</u> ② (현행과 같음) ③ ----- <u>통·반장</u> -----. 제5조(장학생의 정원) ----- <u>통·반장</u>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u>통장자녀장학금</u>----- -----. ② <u>반장자녀장학금은 연1회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u> ③ <u>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u> ----- <u>제8조</u>-----. 제8조(지급정지) ① (생략) 1. <u>통·반장</u>----- 2.~4.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4-1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남동구고시 제2014-78호(2014.05.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1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변경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형 변경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2	소로 3-2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및 부지 (4필지) 편입	

다.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실시계획(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 명 칭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 기 정 : L=214.0m, B=6.0m, A=1,289㎡
- 변 경 : L=214.0m, B=6.0m, A=1,33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도로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용지 조서(변경 있음)

당초 번호	구분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m2)	편입 (m2)	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42	대	367	36	최*석	연락골로 **				
2	당초		42-2	대	35	35	최*석	연락골로 **				
	변경	1	42-3	대	69	69	최*석	연락골로 **				변경 (분할)
3	당초		43-1	대	469	14	한*희	동구송현동23-31 누리아파트***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 20(동암지점)	근저당권	
4	당초		43-12	대	4	4	한*희	동구송현동23-31 누리아파트***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 20(동암지점)	근저당권	
	변경	2	43-19	대	18	18	한*희	동구송현동23-31 누리아파트***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 20(동암지점)	근저당권	변경 (분할)
5	당초		495-24	천	12	5	건설부					
	변경	3	495-24	천	7	7	건설부					
	변경	4	495-30	천	5	5	건설부					변경 (분할)
6	변경없음	5	43-13	대	1	1	이*주	운연동***				변경없음
7	변경없음	6	43-14	대	1	1	배*옥	운연동***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인천시남구간석동47-4	근저당권	변경없음
8	변경없음	7	43-15	대	1	1	배*옥	운연동***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인천시남구간석동47-4	근저당권	변경없음
9	변경없음	8	43-16	대	10	10	배*옥	운연동***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인천시남구간석동47-4	근저당권	변경없음
10	변경없음	9	43-17	대	23	23	장*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3-1 경남아너스빌****-***				변경없음
11	변경없음	10	43-18	대	120	120	최*호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변경없음
12	당초		495-23	천	272	260	건설부					
	변경	11	495-23	천	12	12	건설부					
	변경	12	495-29	천	260	260	건설부					변경 (분할)
13	당초		44-1	임	63	63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14	당초		44	임	106	7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변경	13	44-2	임	70	70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변경 (분할)
15	당초		495-22	천	365	9	건설부					
	변경	14	495-28	천	9	9	건설부					변경 (분할)
16	당초		46-2	도	30	10	김*환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8	당초		46-5	도	4	4	김*환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변경	15	46-7	도	14	14	김*환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변경 (분할)
17	당초		46	대	768	13	김*환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30	당초		46-4	대	1	1	김*환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변경	16	46-6	대	13	13	김*환	운연동 **	남동동단위 농협은행	만수동1014-1	근저당권	변경 (분할)
19	기정		496-3	구	189	3	농림부					
	변경	17	496-10	구	3	3	농림부					변경 (분할)
20	변경없음	18	496-8	구	34	34	농림부					변경없음
21	변경없음	19	46-3	도	5	5	배*식	운연동 **				변경없음
22	변경없음	20	497-4	도	241	241	건설부					변경없음
23	변경없음	21	49-16	도	136	136	배*영	운연동 **				변경없음
24	당초		39-17	대	3	1	배*쇠	운연동 ***-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문당구 정자동215	지상권	
	변경	22	39-18	대	1	1	배*쇠	운연동 ***-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문당구 정자동215	지상권	변경 (분할)
25	당초		40-23	대	87	40	이*규	운연동 ***-	육*호	양천구 신월동 331-51 제일빌라 *층***호	근저당권	
	변경	23	40-26	대	39	39	이*규	운연동 ***-	육*호	양천구 신월동 331-51 제일빌라 *층***호	근저당권	변경 (분할)
26	당초		41-1	대	88	86	이*규	운연동 ***-	대성신용 협동조합	동구만석동72-11	근저당권	
	변경	24	41-2	대	85	85	이*규	운연동 ***-	대성신용 협동조합	동구만석동72-11	근저당권	변경 (분할)
27	당초		40-22	대	18	18	최*조	운연동 ***-				
	변경	25	40-25	대	18	18	최*조	운연동 ***-				변경 (분할)
28	변경없음	26	40-24	도	7	7	최*조	운연동 ***-				변경없음

29	당초		47-3	전	42	15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한국가스 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지상권	
	변경	27	47-4	전	9	9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한국가스 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지상권	변경 (분할)
	변경	28	47-5	전	7	7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한국가스 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지상권	변경 (분할)
31	변경없음	29	48-1	대	37	37	인천광역시					변경없음
32	변경없음	30	48-2	도	6	6	배*원	운연동 **				변경없음
33	변경없음	31	산60-13	임	43	43	건설부					변경없음
	신규	32	495-26	천	1	1	건설부					
	신규	33	495-27	천	34	34	건설부					
	당초	계			3,588	1,289						
	변경	계			1,339	1,339						

☐ 지장물 조서(변경있음)

구분	번 호	건 물 소 재 지		물건의 용도	건 물 구 조	단위	총수량	편입수량	잔여수량	소유자			비고	
		동 명	지 번							주소	연락처	성 명		
당초	1	①	남동구 운연동	42-2	담 장	적벽돌	m	27.0	14.0	13.0	연락골로 **	최*석		
		②	남동구 운연동		문 주	적벽돌	m²	3.3	3.3	-				
		③	남동구 운연동		관상수	사철나무	주	3	3	-				
		소계		담 장	적벽돌	m	27.0	14.0	13.0					
				문 주	적벽돌	m²	3.3	3.3	-					
				관상수	사철나무	주	3	3	-					
변경	1	①	남동구 운연동	42-3	담 장	적벽돌	m	27.0	14.0	13.0	연락골로 **	최*석		
		②	남동구 운연동		문 주	적벽돌	m²	3.3	3.3	-				
		③	남동구 운연동		관상수	사철나무	주	3	3	-				
		소계		담 장	적벽돌	m	27.0	14.0	13.0					
				문 주	적벽돌	m²	3.3	3.3	-					
				관상수	사철나무	주	3	3	-					
당초	2	①	남동구 운연동	40-23	정 화 조	콘크리트조	식	1	1	-	운연동 ***	이*규		
		소계		정 화 조	콘크리트조	식	1	1	-					
변경	2	①	남동구 운연동	40-26	정 화 조	콘크리트조	식	1	1	-	운연동 ***	이*규		
		소계		정 화 조	콘크리트조	식	1	1	-					
변경 없음	3	①	남동구 운연동	43-13	문 주	적벽돌	m²	0.3	0.3	-	운연동 ***	이*주		
		②	남동구 운연동		담 장	적벽돌	m	4.0	0.9	3.1				
		소계		문 주	벽돌	m²	0.3	0.3	-					
				담 장	블록	m	4.0	0.9	3.1					
당초	4	①	남동구 운연동	41-1	컨테이너	3.0×6.0	m²	18.0	9.6	8.4	운연동 ***	이*규		
		②	남동구 운연동		창 고	함석, 조립식	m²	9.0	9.0	-				
		소계		컨테이너	3.0×6.0	m²	18.0	9.6	8.4					
				창 고	함석, 조립식	m	9.0	9.0	-					
변경	4	①	남동구 운연동	41-2	컨테이너	3.0×6.0	m²	18.0	9.6	8.4	운연동 ***	이*규		
		②	남동구 운연동		창 고	함석, 조립식	m²	9.0	9.0	-				
		소계		컨테이너	3.0×6.0	m²	18.0	9.6	8.4					
				창 고	함석, 조립식	m	9.0	9.0	-					
당초	5	①	남동구 운연동	40-22	창 고	함석, 조립식	m²	34.4	4.8	29.6	운연동40-4	최영조		
		②	남동구 운연동		담 장	블록	m	13.4	13.4	-				
		③	남동구 운연동		아궁이	벽돌조	m²	2.6	1.1	1.5				
		소계		창 고	함석, 조립식	m²	34.4	4.8	29.6					
				담 장	블록	m	13.4	13.4	-					
				아궁이	벽돌조	m²	2.6	1.1	1.5					
변경	5	①	남동구 운연동	40-25	창 고	함석, 조립식	m²	34.4	4.8	29.6	운연동 ***	최*조		
		②	남동구 운연동		담 장	블록	m	13.4	13.4	-				
		③	남동구 운연동		아궁이	벽돌조	m²	2.6	1.1	1.5				
		소계		창 고	함석, 조립식	m²	34.4	4.8	29.6					
				담 장	블록	m	13.4	13.4	-					
				아궁이	벽돌조	m²	2.6	1.1	1.5					
변경 없음	6	①	남동구 운연동	43-18	창 고	기와	m²	57.6	55.0	2.6	운연동 ***	최*호		
		②	남동구 운연동		수도시설	블록조	m²	1.3	1.3	-				
		③	남동구 운연동		창 고	스레트	m²	9.9	4.4	5.5				
		④	남동구 운연동		창 고	스레트	m²	21.0	15.1	5.9				
		⑤	남동구 운연동		비닐하우스	비닐, 철파이프	m²	8.8	8.8	-				
		소계		창 고	기와,스레트	m²	88.5	74.5	14.0					
				수도시설	블록조	m²	1.3	1.3	-					
				비닐하우스	비닐, 철파이프	m²	8.8	8.8	-					
당초	7	①	남동구 운연동	44-1	유실수	호두나무	주	1	1	-	서울용산구 청파동		정*순	

		②	남동구 운연동		수도시설	블럭조	m²	0.9	0.9	-	2가 ****~*				
		소계			유실수	호두나무	주	1	1	-					
					수도시설	블럭조	m²	0.9	0.9	-					
변경	7	①	남동구 운연동	44-2	유실수	호두나무	주	1	1	-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정*순		
		②	남동구 운연동		수도시설	블럭조	m²	0.9	0.9	-					
		소계			유실수	호두나무	주	1	1	-					
					수도시설	블럭조	m²	0.9	0.9	-					
		당초	8		①	남동구 운연동	47-3	웬스	철재(H=2.0m)	m					63.0
②	남동구 운연동			유실수	자두나무	주		3	3	-					
③	남동구 운연동			유실수	배나무	주		2	2	-					
소계				웬스	철재(H=2.0m)	m		63.0	32.0	31.0					
				유실수	나무	주		5	5	-					
변경	8			①	남동구 운연동	47-5		웬스	철재(H=2.0m)	m	63.0	32.0	31.0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②	남동구 운연동	유실수	자두나무		주	3	3	-					
		③	남동구 운연동	유실수	배나무		주	2	2	-					
		소계			웬스		철재(H=2.0m)	m	63.0	32.0	31.0				
					유실수		나무	주	5	5	-				
		변경 경유	9	①	남동구 운연동		46-1	담장	블록	m	15.4	5.5	9.9		
소계				담장	블록	m		15.4	5.5	9.9					
변경 경유	기 타	①	남동구 운연동		체신주		주	4	4	-					
		②	남동구 운연동		전력주		주	3	3	-					
		③	남동구 운연동		체신맨홀		ea	1	1	-					
	합 계				담장	적벽돌, 블록	m	59.8	33.8	26.0					
					문주	적벽돌, 벽돌	m²	3.6	3.6	-					
					정화조	콘크리트조	식	1	1	-					
					컨테이너	3.0×6.0	m²	18.0	9.6	8.4					
					창고	함석, 조립식, 기와, 스테이트	m²	131.9	88.3	43.6					
					아궁이	벽돌조	m²	2.6	1.1	1.5					
					수도시설	블록조	m²	2.2	2.2	-					
					비닐하우스	비닐, 철파이프	m²	8.8	8.8	-					
					관상수	나무	주	3	3	-					
					유실수	나무	주	6	6	-					
					웬스	철재(H=2.0m)	m	63.0	32.0	31.0					
					체신주		주	4	4	-					
					전력주		주	3	3	-					
					체신맨홀		ea	1	1	-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4-14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보금자리 주차빌딩】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보금자리 주차빌딩】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축과(☎453-2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1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주차장 5)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보금자리 주차빌딩)
 - 명 칭 : 구월보금자리 주차빌딩 신축공사
- 사업의 규모 : 총 4층(1층 근생 / 2층 근생, 주차장 / 3,4층 주차장), 주차장 32대
토지면적(882.0㎡), 연면적(2078.27㎡)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에이치씨엠개발 대표자 이소미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25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5. 8.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가지번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5	차	882	882	(주)에이치씨엠개발 대표자 이소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25	해당 없음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